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심사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본을 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2.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35조의2제1항제2호”를 “제3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4호의2	300	600	1000
---	-----------------	-----	-----	------

별표 9 비고 중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을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2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5조의2제4항”을 “제35조의3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u> <u>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u> <u>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에서</u> <u>“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u> <u>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u> <u>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u> <u>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본을</u> <u>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해</u> <u>당 데이터를 요청한 자에게 신</u> <u>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주</u> <u>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u> <u>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정보</u> <u>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u> <u>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u> <u>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u> <u>를 말한다.</u> <u>②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u> <u>란 2년을 말한다.</u> <u>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u> <u>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u> <u>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u> <u>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u>

<u>제35조의2</u>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u> <u>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u> <u>다.</u> <u>1.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u> <u>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u> <u>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u> <u>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u> <u>2.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u> <u>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u> <u>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u> <u>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u> <u>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u> <u>제35조의3</u> (현행 제35조의2와 같음)
대통령령 제312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35조의2제4</u> <u>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u> <u>일부터 시행한다.</u>	대통령령 제312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 ---- <u>제35조의3제4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연 락 처	(02) 2110 - 1566